

“코로나19, 위기를 기회로 !!” 인천시 구직청년을 위한 「2021 드림체크카드」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구직청년을 위한 「드림체크카드」 사업(이하 '드림체크카드')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1. 05. 03.

(재) 인천 테 크 노 파 크

인천 구직청년 「드림체크카드」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만19~39세 인천시 거주,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·중퇴·수료자
* 고등학교,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하며, 세부자격요건은 아래 2번 참조
 - 선정인원 : 640명 내외 선정 예정(320명 우선선발, 추경 후 320명 추가선정)
※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,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
 - 접수기간 : 2021. 5. 3.(월) 14시 ~ 5. 21.(금) 18시까지, 3주간
 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<http://dream.incheon.kr>)
 - 선정절차 : 신청서 접수 → 자격확인·심사 → 지원대상 선정
- ※ 신청 시 본인이 기재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필수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선정발표 : 2021. 6. 11.(금) 예정
- 지원내용 :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(1인 최대 300만원)
- 지급방법 : 드림체크카드 30만원 + 인천e음 20만원
- 지원항목 :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·간접비용
- 직접비 : 교육비, 도서구입비,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
- 간접비 : 면접 준비비, 교통비, 식비, 통신비 등
- 생활비 : 의료비, 생필품, 의류비 등

신청자격 세부 요건

-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,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- 1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광역시인 자(본인)
 - 2) 공고일 기준 만 19 ~ 39세 이하인 자(1981. 5. 4.부터 2002. 5. 3.까지 출생)
 - 3)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(공고일 이후 퇴사자는 신청불가)
 - 4)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(19~34세 : 120%초과~150%, 35~39세 : 50%초과~150%)
 - 5) 최종학력 졸업·중퇴·수료자
- ※ 위 자격 조건은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

- 1)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'주민등록상' 인천 시 거주 중인 자
- 2) 나 이 : 공고일 기준 만 19 ~ 39세
 ※ 주민등록상 1981년 5월 4일 ~ 2002년 5월 3일 생
- 3) 미취업 :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,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
 -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
- 4) 중위소득 : (19~34세) 120%초과 ~ 150%, (35~39세) 50%초과 ~ 150%
 - 공고일 직전 3개월(21년 2월 ~ 21년 4월)동안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
 ※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지만(35~39세는 50%)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「불인정 통지서」 제출 및 확인 후 지원가능

①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

- 만19~34세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150% 이하 구간 기준

가구원수	소득수준(원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193,000초과 ~ 2,742,000이하	75,224초과 ~ 94,467이하	30,663초과 ~ 69,399이하	75,461초과 ~ 95,459이하
2인	3,706,000초과 ~ 4,632,000이하	128,342초과 ~ 159,583이하	117,560초과 ~ 160,445이하	129,761초과 ~ 161,571이하
3인	4,781,000초과 ~ 5,976,000이하	165,968초과 ~ 206,575이하	168,444초과 ~ 220,777이하	168,195초과 ~ 209,941이하
4인	5,852,000초과 ~ 7,314,000이하	203,558초과 ~ 252,295이하	216,474초과 ~ 277,765이하	206,575초과 ~ 257,849이하
5인	6,909,000초과 ~ 8,636,000이하	237,681초과 ~ 296,707이하	259,446초과 ~ 329,659이하	242,008초과 ~ 308,297이하
6인	7,954,000초과 ~ 9,943,000이하	278,094초과 ~ 354,781이하	309,041초과 ~ 393,994이하	286,737초과 ~ 380,152이하
7인	8,997,000초과 ~ 11,246,000이하	321,769초과 ~ 414,255이하	356,168초과 ~ 456,308이하	337,302초과 ~ 449,388이하

- 만35~39세 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50% 이하 구간 기준

가구원수	소득수준(원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007,000초과 ~ 2,742,000이하	69,016초과 ~ 94,467이하	23,243초과 ~ 69,399이하	69,718초과 ~ 95,459이하
2인	2,007,000초과 ~ 4,632,000이하	69,016초과 ~ 159,583이하	23,243초과 ~ 160,445이하	69,718초과 ~ 161,571이하
3인	2,590,000초과 ~ 5,976,000이하	89,069초과 ~ 206,575이하	58,319초과 ~ 220,777이하	89,626초과 ~ 209,941이하
4인	3,170,000초과 ~ 7,314,000이하	109,494초과 ~ 252,295이하	99,230초과 ~ 277,765이하	110,271초과 ~ 257,849이하
5인	3,742,000초과 ~ 8,636,000이하	129,761초과 ~ 296,707이하	119,161초과 ~ 329,659이하	131,102초과 ~ 308,297이하
6인	4,309,000초과 ~ 9,943,000이하	148,183초과 ~ 354,781이하	145,418초과 ~ 393,994이하	150,077초과 ~ 380,152이하
7인	4,873,000초과 ~ 11,246,000이하	168,195초과 ~ 414,255이하	171,434초과 ~ 456,308이하	170,536초과 ~ 449,388이하

② 가구원수 산정방법 : 가족관계증명서 기준

- (미혼) 부·모·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, 형제·자매 포함여부는 선택
 - ※ 형제·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
- (기혼) 본인·배우자·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, 본인 및 배우자의
 - * 부모와 형제·자매 포함여부는 선택사항(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함)
 - **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·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
-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 수만 산정함

5) 최종학력 :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, 대학(원) 졸업·중퇴·수료자

-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(휴)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

구 분		재(휴)학생	졸업생	
①	고등학교/고등기술학교	참여불가	참여가능	
②	2~4년제 대학(원) 등 각종 학교	일반대학(원)		참여불가
		야간대학(원)		참여가능
		원격대학		참여가능
		학점인정제		참여가능
③	기타 학교	참여불가		

* 졸업유예, 졸업예정은 졸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

- 지원제외 대상 : 다음의 경우에 **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**
- 1)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졸업예정자,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)
 - 2)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2020-170호, 2020.08.07.) 미충족자
 - 3)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,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
 - *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있을 시 신청불가(20년 10월까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)
 - **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, 교육,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
 - 4) 2019~2020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
 - * 사업참여 중 취·창업으로 지원종료,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
 - 5)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
 - *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
 - 6)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
 -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내일배움카드 등 유사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동시참여 불가
 -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참여이력 보유자(20년 11월 ~ 현재까지)
 - 그 외 본 사업에서 동시(중복) 또는 순차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나, 동기간 참여되는 타사업에서 우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·순차참여 불가할 수 있음

사업명		동시 참여		순차 참여	
		가능	불허	종료 직후	종료 6개월 후
생계급여			○	○	
실업급여			○		○
국민취업지원제도 (청년구직활동지원금)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			○		○
내일배움카드			○		○
정부지원 직업훈련			○		○
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	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	○			
	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		○	○	

- 참여자 의무사항
- 구직활동 실적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(매월)
 -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·제출 시 지급중단
 - 드림체크카드 사업설명 오리엔테이션(OT) 참석
 - 미참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- 드림체크카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 2회 의무 참여
 - 미참여 시 지원중단
 - 인천지역 외 거주지(주민등록) 변경, 취·창업, 타기관 구직활동 참여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참여중단 신청서 제출
 - 미제출시 자격상실 이후 사용분 환수 및 지급중단

- 1)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- 2) 해당파일 스캔 후 홈페이지 업로드(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)
 - * 출력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나, 한글 또는 워드 작성파일과 화면 캡처는 불인정함
- 3)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(5/21, 18시)기준 홈페이지 업로드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
 - * 하나라도 미제출된 자료 있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

- 제출처 : 홈페이지 업로드(<http://dream.incheon.kr>)
- 제출방법 : 제출서류 작성 및 발급하여 스캔 후 첨부파일 업로드
 - ※ 제출서류별 발급방법은 홈페이지(<http://dream.incheon.kr>) 내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

[필수 제출]

- 온라인 참여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각 1부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본인 및 가구원 용) 각 1부
 - ※ 가구원용의 경우 본인 제외 건강보험료 합산에 해당하는 가구원 모두 작성
- 주민등록초본 1부 (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)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- 신청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(상용) 이력 내역서
-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미혼 : 부모님 기준, 기혼 : 본인기준)
-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납부확인서 (21. 2. ~ 21. 4.)
 - * 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(가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)

[해당자만 제출]

- 근로계약서 1부(주 30시간 미만 근로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만 해당)
- 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 1부
 - *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탈락된 경우 필수 제출
- 코로나19 확진 및 실직여부 증빙서류
 - 코로나 확진 가구 : 코로나 확진 병원진단서 1부
 - 코로나 실직가구
 - ① 실직 :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.
 - ② 휴직 :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1부.
 - ③ 휴/폐업 :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1부.
- ※ 필수 제출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자료 요청할 수 있음

○ 제출서류 안내 ※신청서식 :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(<http://dream.incheon.kr>) 게시

구 분		제출안내	
필수	참여신청서 (온라인 작성)	▪ 신청자 오기 입력 시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기입	
	구직활동계획서 (온라인 작성)	▪ 구직활동 목표 및 계획, 이력서 형식의 계획서 내용 작성	
	개인정보동의서	▪ 신청인 본인 필수 작성 ▪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가구원 전원 필수 작성(누락 시 지원 불가) ※ 작성인 자필 서명 필수(누락 시 불인정)	
	주민등록초본	▪ 공고일인 2021년 5월 3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(이전 발급분 불가) ▪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포함하여 발급(누락 시 신청불가) ▪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 이력 전체 이력 및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발급	
	최종학력 졸업증명서	▪ 공고일인 2021년 5월 3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(이전 발급분 불가) ▪ 본인이 최종으로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 ▪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 학력으로 간주함 ▪ 해외학교를 졸업한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	
	고용보험 피보험 자격(상용)이력내역서	▪ 본인의 전체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가능해야 함 ▪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(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)	
	가족관계증명서	▪ 공고일인 2021년 5월 3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(이전 발급분 불가) ▪ 미혼인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, 기혼인 경우 본인 기준 발급	
	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본인 및 가구원)	▪ 2021년 2월 ~ 4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▪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 발급 및 제출 ▪ 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납부고지서로 대체	
	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(상용/전체이력포함)	▪ 미혼 : 본인, 부, 모 (필수) 및 형제/자매(선택)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▪ 기혼 : 본인, 배우자 (필수) 및 자녀(선택) 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 ※ 미성년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“ 자격확인(통보)서 ”로 대체	
해당자 (선택)	근로계약서	▪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▪ 인적사항 및 근로조건, 기간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	
	국민취업지원제도 불인정통지서	▪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지만(35~39세는 50%) 재산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 미달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외된 대상은 필수 제출	
	코로나19 가산점 서류	공통	▪ 코로나19 가산점 대상자 신청서
		확진 가구	▪ 코로나 확진 내용이 포함된 병원 진단서 제출
실직 가구		▪ 실직 : 해당 가구원의 실직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 ▪ 휴직 : 휴직 처분사항이 기재된 휴직증명원 제출 ▪ 휴/폐업 : 국세청에서 발급된 휴/폐업 사실 증명원 제출	

○ 구비서류 발급 방법

구 분	제출안내
주민등록초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
최종학력 졸업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민원포털 정부24 (www.gov.kr)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 해당 학교 민원실 등
고용보험 피보험 자격(상용)이력내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력서 발급은 http://total.kcomwel.or.kr/ → 개인 → 증명원 신청·발급 →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고용/상용 선택) ※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에서도 발급 가능 ※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: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용이 없다는 이력내역서 첨부(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 가 표시되어야 함)
가족관계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본인 및 가구원) 및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(상용/전체이력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민원포털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발급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회원가입 → 방문자별 맞춤메뉴(개인) → 조회 및 발급 →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스마트폰 앱 이용 : “M건강보험” 앱설치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이용 주민센터(무인발급기)

IV 신청 절차

○ 신청기간 : '21. 5. 3.(월) 14:00 ~ 5. 21.(금)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구 분	신청방법
① 홈페이지 접속	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dream.incheon.kr) 접속
▼	
② 회원가입	회원가입(개인정보 입력, 약관 동의)
▼	
③ 참여신청	드림체크카드 “참여신청” 메뉴 접속 후 신청
▼	
④ 신청서작성	신청자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, 구직활동계획서 등 작성
▼	
⑤ 구비서류제출	구비서류 업로드(스캔 또는 사진 촬영된 파일) ※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 파일로 통일

*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기한(5/21, 18:00)까지 제출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 이후 접수 분은 무효처리함

V 선정 기준

- 1차 : 정량적 평가(최종인원의 120% 내외 선발)
 - 가구 기준중위소득 및 미취업 기간, 인천시 거주기간으로 평가

항목 (배점)	가구 기준중위소득 (40점)	미취업기간 (30점)	인천시 거주기간 (30점)	코로나19관련 가산점(10점)
평가 내용	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 수 비율	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상실일 중 최근일 기준	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기간	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확진가구

- 동점일 경우 중위소득, 미취업 기간, 인천시 거주기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- 2차 : 정성적 평가
 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구직활동계획서 내용을 평가하며,
사업목표의 적합성과 구체성 등을 심사

VI 최종선정 및 발표

- 일 시 : 2021. 6. 11.(금) 예정
 - * 발표 일정은 접수인원 과다로 심사일정 지연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
 - 방 법 :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확인,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
 - 참여자 오리엔테이션
 - 목적 : 사업설명, 유의사항, 카드발급,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
 - 시기 : 최종 대상자 발표 후 2주 이내(6월 중 예정)
 - 필수 확인사항
 - 1) 드림체크카드 및 인천e음카드 개설, 서약서 제출 (사업 오리엔테이션 시 안내)
 - 2) 기타 카드사(은행) 및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등
 - 3)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 취업 등으로 자격상실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※ 인천TP 사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식은
다소 변경될 수 있음**

-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- “드림체크카드”는 온라인 신청·접수를 원칙으로 하며, 본인이 기재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지원기간 중 개명, 전화번호 변경,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며, 불참 시 지원중단 처리됩니다.
- 대리결제를 통한 현금화,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중단,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-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예정인 경우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.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만 해당)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드림체크카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제한,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문의처 :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(032-725-3072~4)